

기술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¹⁾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 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한양대
2000. 5. 27.

본 논문은 초고입니다.
인용하실 경우 상의해 주십시오.

이병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설성수, 이기호, 한남대 경제과/하이테크비즈니스학과

306-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016-773-6662 keeho21@kornet.net

1) 본 논문은 2000년 4-5월, 기술혁신학회의 기술가치평가사 창립교육을 위한 콜로кви움에서 발표된 “기술가치평가 개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I. 서문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벤처기업(High-tech start-ups)의 급격한 등장과 코스닥(KOSDAQ)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자금시장의 급속한 성장²⁾, 그리고 M&A의 확산이다. 벤처기업의 수는 1995년을 기준으로 1999년 현재 약 250%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³⁾, 코스닥에 등록된 약 38%의 벤처기업이 전체 코스닥시장 거래금액의 약 70%를 점하고 있다⁴⁾. 또 IMF 이후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의 통폐합과정에서, 기업 인수합병이 총 237건에 달하고, 그 금액도 194억\$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98년과 비교해서 약 62% 정도가 성장한 수치이다. 외국 M&A 자본도 막대하게 유입되어 기업환경자체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⁵⁾. 이러한 국제적인 M&A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협상과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업가치 평가 또는 신규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기술가치를 평가할 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기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또 코스닥 투자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심의 벤처기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전문가의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벤처기업육성을 통한 고도지식사회 진입 및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려는 전략 아래, 기술기반산업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법’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창업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특히 또는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부족하다는 평가⁶⁾ 속에서 새로운 기술거래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1월 ‘기

2) 강정호,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코스닥의 역할”,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 심포지엄, 2000. 4.

3) 벤처기업 증가추이 (단위 : 기업수)

| | 1995 | 1998 | 1999 | 2005 |
|----------|------|-------|-------|--------|
| 벤처기업수 | 200 | 3,000 | 5,000 | 40,000 |
| 코스닥 등록기업 | - | 300 | 450 | 5,000 |

자료 : 강정호, “기술벤처 육성을 위한 코스닥의 역할”,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한국기술거래소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0. 4.

4) 강정호, 앞 글, 2000. 4.

5) <표 2>M&A 금액현황 (단위:백만\$)

| | 1997 | 1998 | 1999 |
|-----------|-------|--------|--------|
| M&A해외자금유치 | 1,720 | 8,480 | 19,980 |
| M&A기업가치 | | 11,700 | 19,000 |

자료 : 서울경제신문, 1999. 12. 23. ; 2000. 2. 22.

술이전촉진법' 공포 및 4월10일 '한국기술거래소'가 창립하였다. 이러한 기술담보제도 및 기술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가치평가기관을 필수로 한다. 현재 기술가치의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상태⁷⁾에서는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 및 전문적인 평가기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술가치평가 업무자체가 전문적이고 기업의 비밀보호 등 엄격한 규율 및 윤리성을 필요로 함으로 기술가치평가전문인의 양성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로 하다.

현재 한국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부와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기술성(기술력) 분석(evaluation)이 있다. 이는 기술의 동향, 기술수준 및 등급을 분석하고 기술개발의 목표 및 전략성을 분석하며, 기술적 성과,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환경문제와 같은 기술의 사회, 환경분석(assessment)을 위주로 기술의 사회적 영향, 즉 이익 및 피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주로 기술의 국방, 안보적 요인 및 상업, 정치, 문화적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로는 기술의 경제성 및 사업성분석으로 cost benefit을 위주로 현장중심의 경제성분석(feasibility study)과 경제적인 파급효과(economic effect) 및 기여도를 분석한다. 넷째로는 회계사나 재무분석가 등을 통해 사용되는 협의의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로, 이 방법은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은 무시하고 돈으로 환산되는 화폐가치만을 측정한다⁸⁾.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기존의 방법론에 의한 기술의 평가도 돈으로 표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⁹⁾, 또 기술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일부 기술평가기관에서는 기술의 기술성 검토는 과학기술전문가가 사업성 검토는 회계나 재무전문가라는 식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술이 단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간 경쟁, 시장에서의 호응도, 시장활동을 위한 보완기술의 존재여부 등 기술자체보다 기술과 시장이 결합된 요인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과학기술계와 비즈니스계 두 집단의 사고나 평가기준이 너무 커 정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다¹⁰⁾. 따라서 기술의 종합적인 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6) 이회법, "기술이전촉진법제정 배경 및 정책방향",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 심포지엄, 2000. 4.

7) 김선봉,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 심포지엄, 2000. 4.

8) 설성수, "기술가치평가의 분석틀",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9) 설성수, 앞 논문, 2000. 3.

10) 설성수, 앞 논문, 2000. 3.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술가치평가시장의 수요에 대해 예상하고 정부의 정책방향 및 법률안을 분석하여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및 제도 보완을 논증한다. 또 기존의 가치평가관련 제집단을 분석하고 관련 기술가치평가기관의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가치평가전문인으로서의 기술가치평가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술(기업)가치평가 기관 및 기술이전기관, 기술거래기관 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기술거래사' 및 '기술가치평가사'간의 역할 및 기술가치평가사의 자격요건과 성격, 기능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

1. 사회적 수요의 증대

기술평가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기술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or} 대상거래기술의 규모를 약 2,500억 정도로 예상¹¹⁾하고 있다. 이것에 약 5-10% 수수료를 적용하면 약 125억에서 250억 평가시장이 예상된다. 또 기술담보제도를 위한 기술가치평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기술평가예상 건수를 연간 8800건¹²⁾으로 예측하며, 타 기관의 의뢰에 의한 평가수수료 수입도 약 연 10억 정도를 예상한다¹³⁾. 또 다른 기술담보 평가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현재 연간 1,000건 (평가료 평균 1,200만원)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한다¹⁴⁾.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수요가 공공기술 중심의 기술성분석과 산업재산권 및 기술담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술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창투자 및 증권사, 은행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M&A, 기술의 현물출자, 그리고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등 민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기술평가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대략적인 예상 수요는 아래와 같다. 우선 1단계 기술성분석시장이 연간 20,000건에 약 100억원 시장이다(건당 500,000원). 또 2단계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시장이 연간 5,000건에 약 75억원 시장이다(건당 1,500,000원). 그리고 3단계 기술성 및 시장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연 10,000건에 300억 시장으로 추정된다.(건당 3,000,000원) 따라서

11) 중앙일보, 2000. 3. 16.

12) 문화일보, 2000. 3. 6.

13) 양동우, 기술가치평가콜로키엄 발표중, 2000. 4. 22.

14) 서상혁, 기술가치평가콜로키엄 발표중, 2000. 4. 29.

2000년 현재 약 475억 원의 기술평가 시장이 예상되며, 이중 약 40%를 민간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약 190억 시장이 예상된다. 또 기술가치평가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대로 볼 때 2005년에는 전체 규모가 약 2600억 시장으로 성장하며, 약 70%를 민간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면 약 18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예상된다.

<표1> 기술가치평가시장 예상

| 연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성장율 | 70 | 60 | 50 | 40 | 30 | 25 |
| 시장규모 | 475 | 760 | 1140 | 1600 | 2070 | 2600 |
| 민간부문 | 190(40%) | 342(45%) | 570(50%) | 880(55%) | 1242(60%) | 1820(70%) |

2. 정부의 정책방향

IMF 이후 정부의 산업 및 기업관련 정책방향은 기존 대기업의 선단식 운영체제를 해체하고 전근기업으로 유도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산업을 지원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을 1998년 5월부터 등록 받기 시작하여, 2000년 1월 현재 약 5500개가 등록되었고¹⁵⁾, 2005년까지는 약 5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¹⁶⁾. 또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1997),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1997) 세금감면 및 투자자금지원을 위해 기술담보 제도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 벤처평가기관 및 기술담보를 위해 산업재산권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평가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과 전통산업중심의 기존 거래소를 대신하여 코스닥(KOSDAQ) 시장을 법제화하였다.(1997. 4.) 원활한 기술기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의 이전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이전 촉진법을 제정(1999. 12.)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기술이전협회를 창립하였으며 (2000. 2.), 민간기술거래기관을 지원하고(기술이전협회. 2000. 3.), '기술거래소'(2000. 4. 10.)를 민관합동투자로 설립하여 '기술거래사' 및 기술평가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¹⁷⁾.

15) 매일경제, 2000. 1. 15.

16) 포스코센타에서 대통령보고, 2000. 1. 24.

17) <그림1> 기술사업화매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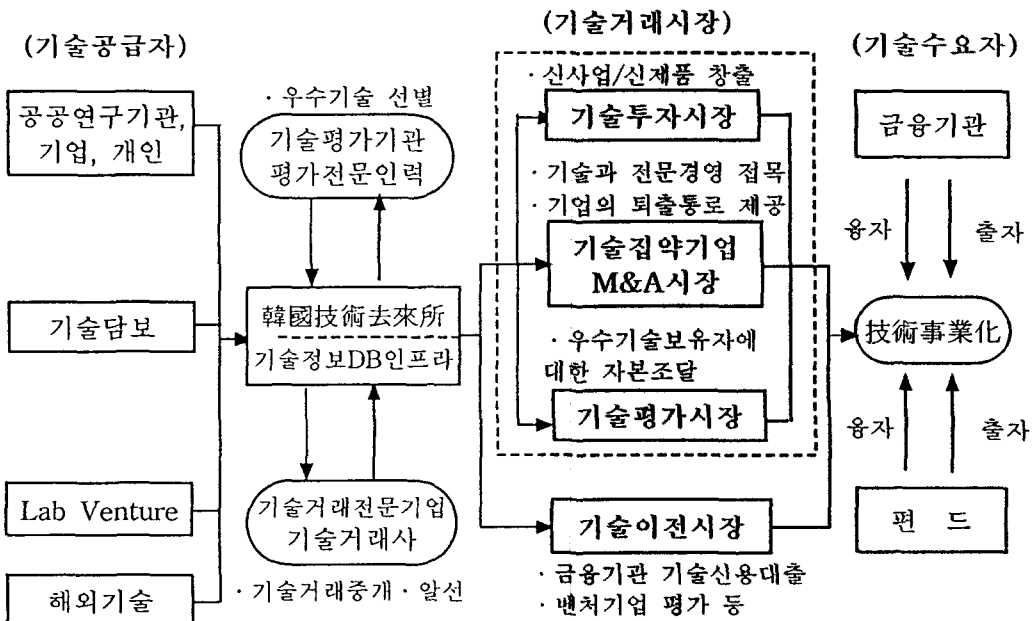
현재 기술관련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구 및 정책으로는, 벤처종합대책 및 기술개발지원, 공업기반기술개발, 창업진흥기금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청과, 정보통신산업창업지원 및 보육센터 지원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정보통신부, 그리고 보육센터 지원과 기술개발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과학기술부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며, 또 산업자원부의 경우에도 기반기술 확충 및 대학 및 공공기관의 창업

<표2> 주요 벤처기업 지원부처 (1999년 기준)

| 주요대상 | 중소기업청 일반제조업 |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 과학기술부 기초기술분야 |
|-------|---|--|---|
| 지원자금 | * 7,500억원 - 창업투자회사자금 - 기술혁신개발자금 - 공업기반기술개발 - 창업진흥자금 | * 2,613억원 - 정보통신기술개발자금 - 국책연구개발산업 - 정보화촉진기금 | * 2,005억원 - 한국종합기술금융 - 과학기술진흥기금 - 특정연구개발기금 |
| 사업내용 | * 벤처종합대책수립 * 기술개발지원 * 창업투자회사운영 | * 정보통신산업창업지원 * 보육센터등 입지지원 * 기술개발지원 | * 보육센터등 입지지원 * 기술개발지원 |
| 관련지원법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정보화통신 기본법 | * 기술개발촉진법 * 과학기술진흥법 |

자료 : 김용환, “한국 벤처산업의 발전방향과 모델”,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 방향, 한국기술거래소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0. 4.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¹⁸⁾. 특히 1999년 말 ‘기



자료: 이희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배경 및 정책방향”,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거래소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0. 4. 10

술이전 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각 부서간 역할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향을 갖도록 시도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및 거래지원, 기술담보제도, 그리고 기술가치평가 사업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관련법령분석

기존의 기술평가관련법안은 기술예측 및 영향평가에 관한 '과학기술진흥법',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재산권 가치평가를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담보를 위해 '산업기술평가원'을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 대해 정보화 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을 평가하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이 있으며, 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발명진흥법', 그리고 기술의 이전과 거래를 위해 '기술거래소'의 신설 및 기술가치평가를 시행할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명시한 '기술이전촉진법' 등이 있다. 특히 '기술이전촉진법'에서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부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고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진일보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령 중 '과학기술진흥법'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발명진흥법' 등은 기술담보제도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제도에 대하여 기술력평가(evaluation)와 기술영향평가(assessment) 개념을 애매하게 섞어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요망된다. 또 기술이전촉진법의 경우 기술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육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술거래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가치평가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기술거래를 위한 기능에 비해 기술평가의 기능이 좀 더 고도하며, 기술거래는 민간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나,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윤리적인 전문가에 의해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므로 국가에 의한 지원, 육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기술가치평가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1. 과학기술진흥법

본법에서는 기술의 평가를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 문화 등 제

18) 산자부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1999. 8. 27.

부문에 대한 편익증진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비(제16조)”라고 명시하여 기술의 예측 및 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측면을 위주로 기술을 평가함을 표현하고 있다¹⁹⁾. 또 공공기관 중심²⁰⁾ 기술성 및 기술력 평가를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기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또 그 “자금의 출처를 과학재단법 등의 기금, 기술복권수입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별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중 수입금”(시행령)등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중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본법에 규정된 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을 기술담보대출을 위한 기술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다²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법에서는 평가기관을 “해당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화능력을 평가하여 본법이 정하는 자금지원 등 제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제2조), 벤처기업평가기관과 “산업재산권을 벤처에 현물투자할 때의 그 가격산정을 목적으로 행하”(제6조)는 기술평가기관²¹⁾으로 나누었다. 동법2조에 따라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기술

19) 과학기술진흥법 제16조 (기술평가및기술기준)

[전문개정 1991. 11. 22. 法律第4402號]

第16條 (技術評價 및 技術基準) ①政府는 새로운 技術이 초래할 수 있는 經濟·文化等 諸部門에 대한 便益增進效果 및 副作用을 사전에 評價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評價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技術基準을 制定·施行하여야 한다.

③科學技術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의 制定·施行을 關聯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評價의 對象技術의 범위 및 評價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의 制定·施行에 관한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0) 한국경제, 2000. 1. 30.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특례)

[제정 1997. 08. 28. 法律第5381號]

第6條 (産業財産權등의 出資 特例) ①벤처企業에 대한 現物出資 대상에는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기타 이에 준하는 技術과 그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이 條에서 “産業財産權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産業財産權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 評價內容은 商法 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된 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평가기관)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기타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였다²²⁾.

이 법은 주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에 대한 가치평가 및 사업화 지원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본법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중의 하나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평가기관에 대하여는 민간 위임이 가능함을 명시²³⁾하고 있다.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2) 시행령 제4조 (기술평가기관)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2·28, 99·1·29, 99·2·26]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삭제 [99·4·30]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한다)
5. 기타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평가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2·28]

2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 (기술개발의추진)

[제정 1995. 08. 04. 法律第4969號]

第18條 (技術開發의 추진) ①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研究開發, 開發技術의 評價 및 活用に 관한 사항
2. 技術協力·技術指導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사항
4. 産學協同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情報通信産業 技術開發과 관련된 研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법에서는 기술담보사업의 실시(본법2조와 14조의2)와 이를 위한 평가기관으로서의 '산업기술평가원'의 신설과 역할(14조4)을 명시²⁴⁾하고 있다.

5. 발명진흥법

본법에서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사업화를 의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특허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지정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평가기관 지정, 평가신청, 사업화 자금 알선 등의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제21조)²⁵⁾. 따라서 본 조문은 전형적으로 연구기관을 중심으

24) [개정 1999. 02. 08. 법률제5834호]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13, 97·12·13, 99·2·8 法5825]

6. “技術擔保制度”라 함은 金融機關에서 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技術에 대한 評價를 통하여 價値를 算定하고, 그 技術을 擔保로 資金을 貸出하는 制度를 말한다

第14條의4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의 設立 등) ①技術基盤造成事業 등에 대한 評價·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이하 “評價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本條新設 99·1·29 法5725]

第14條의2 (技術擔保事業의 실시)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技術擔保制度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의 資金으로 技術을 擔保로 하여 貸出하는 事業(이하 “技術擔保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1·29 法5725, 99·2·8 法58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技術評價院으로 하여금 技術擔保事業을 위한 技術評價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9 法5725]

③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技術評價院은 技術評價를 의뢰한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料를 徵收하여 産業基盤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法57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基盤基金의 부담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評價에 소요된 經費를 第14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技術評價院에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9·1·29 法5725]

⑤技術評價등 技術擔保事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13]

25) 第21條 (發明의 評價機關指定등) ①特許廳長은 産業財産權으로 登錄된 發明의 早速한 事業化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發明의 評價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國·公立研究機關, 政府出捐研究所, 民間企業研究所 또는 기술성·사업성 評價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機關을 發明에 대한 評價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發明을 事業化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評價機關(이하 “評價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發明의 技術성과 사업성에 관한 評價를 요청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要請을 받은 評價機關은 發明을 우선적으로 分析·評價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回報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評價機關의 長과 協議할 수 있다.

1. 評價對象技術 및 評價範圍

로 시행되는 기술성 평가를 위주로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6. 기술이전촉진법

“민간 및 공공부문의 기술이전, 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목적²⁶⁾”으로 1999. 12. 제정된 본 법은 기술이전 및 중개 등 기술거래활동의 활성화, 기술평가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민간기술이전기관 및 ‘기술거래사’ 육성, 지원, 기술이전정보 유통체제 및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기반구축,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지원을 위한 유인책 강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심의회’ 운영²⁷⁾, ‘한국기술거래소’ 설립²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및 육성,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및 육성,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 지원 및 ‘기술거래사’제도 운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등을 주 추진 체계로 한다²⁹⁾.

본법의 제8조(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에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부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상의 지원을 한다고 규정”³⁰⁾하고 있다.

2. 評價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評價手數料

3. 評價機關과의 業務協約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評價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6)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公共研究機關에서 開發된 技術을 民間部門에 移轉하여 事業化를 촉진하고, 民間部門에서 開發된 技術이 원활히 去來될 수 있도록 關聯施策을 수립·추진하며, 技術移轉·技術評價 및 技術情報의 流通 등 그 基盤을 확충함으로써 産業全般의 技術競爭力 強化를 통한 國家經濟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27) 第4條 (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計劃의 수립 및 施行)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관한 政策目標와 그 目標達成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計劃(이하 “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8. 技術評價制度의 定立과 技術評價機關의 육성

28) 第6條 (韓國技術去來所의 設立·운영)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技術의 원활한 移轉, 技術去來·技術評價의 촉진 및 促進計劃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韓國技術去來所(이하 “去來所”라 한다)를 設立한다.

3. 技術去來·評價情報의 蒐集·分析·評價 및 제공

29) 이회법, 기술이전법촉진법 제정배경 및 정책방향, 한국기술거래소심포지엄, 2000. 4. 10.

IV. 관련전문가 및 기관분석

1. 한국의 관련 전문가

한국에서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전문가집단은 없으며 기존의 여러 집단들도 아래에서 보듯이 각각 부분적인 경험과 평가기법을 가지고 전체 기술가치평가시장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³¹⁾.

우선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집단으로는 기존의 공공기술가치평가를 주요한 연구프로젝트로 시행하는 기술경제 및 기술경영 전공 연구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술의 평가와 관련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한 이론의 재정립 및 체계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론의 재정립을 위한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³²⁾, 공공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사례들을 갖고 있다. 다만 민간기술과 관련한 기술가치평가에서는 이론적인 깊이에 비해 사례가 부족하여 좀 더 많은 경험과 체계적인 사례 분석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행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변리사'가 있다. 최근 '변리사'는 이공계전공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기술과 관련한 활동이 두드러지며, 최근 기술거래와 관련하여도 기술거래 업체로 등록하는 '변리사'가 늘어나면서 민간기술거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기존의 활동이 법률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술의 거래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기술가치평가에서는 특별한 교육 및 훈련

30) 第8條 (技術評價專門機關의 지정 및 지원)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의 價値評價를 통하여 당해 技術의 實效性을 提高하고 원활한 技術移轉 및 事業化와 技術의 擔保提供 등 技術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審議會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技術評價專門機關(이하 "評價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政府는 技術評價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하거나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機關의 지정기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1) 김선봉,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 심포지엄, 2000. 4.

32)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회계사'로서 미국의 경우 기업가치평가사의 대부분이 '회계사' 출신 ~~인~~ 소정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다만 회계의 속성상 과거 이력인 장부수치에 매몰되어 기술과 같은 지적자산의 미래적 가치평가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감사 및 회계 업무를 제외한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다. 특히 이공계에 대한 ~~지식~~이 고등학교 때부터 단절된 한국적 교육풍토 아래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참여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한 교육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네 번째는 '감정평가사'로서 미국에서는 '감정평가사' (appraiser)의 역할이 예술품 및 보석류를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 모두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 기업가치 및 지적재산가치평가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고 있어, 공공 및 사적 목적의 지가의 조사평가 및 출자, 담보, 일반거래를 위한 토지 가액 평가 등을 그 주요한 업무로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평가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무형자산평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나 그 경험과 내용은 아직 부족하다.

다섯 번째는 현재 몇몇 기관의 평가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사' 및 '기술경영컨설턴트' 들이 있다. 이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의 예측 및 등급을 매기는 기술성 분석에서 일정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회계사'나 재무분석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기술가치평가에도 일정정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법과 이론의 부족으로 평가가 한쪽에 치우치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기술가치평가의 기법과 경제, 경영적 이론을 채움으로써 기술가치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사의 참여에 비해 기술경영컨설턴트의 ~~참여~~는 아직 미미하나 중소기업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상 기술경영컨설턴트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기술가치평가업무에 참여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변호사'들이 벤처기업 지원이나 M&A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업무에 참여하나 평가자체에 참여하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기술거래사' 제도가 기술이전촉진법을 바탕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들은 기존에 기술을 거래한 실적을 위주로 선발될 예정³³⁾이며 변리사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다만 기술거래는 그 속성상 민간의 역할임으로 등록의 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기능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가치평가사'와는 상호 협

33) 이회법, "기술이전촉진법제정 배경 및 정책방향",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 심포지엄, 2000. 4.

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2. 한국의 관련기관

아래 표에서 보듯 여러 법에서 규정된 사업을 위한 여러 평가관련기관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낮은 신뢰를 받는 실정이며, 특정정책목적을 위한 기술평가가 초

<표3> 국내기술평가기관비교

| 관계법령 | 주무관청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목적 |
|------------------|------|---|--|-----------------------------|
| 과학기술진흥법 | 과기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력 및 기술성 |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 중기청 |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주로 사업성 평가 | 벤처기업 지원 |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기타 산재권 기술평가 기관 | 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한 산재권의 가치평가 |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출자특례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 |
| 정보화촉진기본법 | 정통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 정보통신산업 기반 조성 |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 |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 산자부 | 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반기술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 담보가치평가 | 금융지원 |
| 발명진흥법 | 특허청 |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 | 발명의 사업성 평가를 통한 금융기관의 지원 | 발명기술의 사업화 지원 |
| 기술이전촉진법 | 산자부 | 미정 | 기술이전 및 거래를 기술의 가치평가 |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 |
|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법률 | -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서 발급 공공기관의 의뢰에 의한 기업기술력평가 | 금융지원 |

자료 : 양동우(2000나), 수정보완.

보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아직 신뢰성 있는 공공 평가기

관 및 인력도 부족하며³⁴⁾, 또 기술가치의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미확보된 상태이다³⁵⁾.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에서 기술담보제 시행을 위한 기술력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은 이름 그대로 기술력 및 기술성 평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 환경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정적인 법률에 적용을 받고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벤처평가기관인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거래를 위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아닌 단순히 벤처기업 지정을 위한 소정의 요건을 확인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인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해 새로운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존의 기관의 경우에도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평가의 표준 및 통일성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V. 미국의 관련제도와 기관

미국의 경우 '기술가치평가'보다는,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 등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을 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가 더 널리 사용되며, 1980년대 중반이후 특허문제가 제기되며 기술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가 이론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미국산업기술협회(IRI)'가 가치평가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³⁶⁾, 1991년 '국가공인평가사회(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가 설립되어, 기존의 '미국평가사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및 '기업평가사협회(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와 함께 본격적으로 기술을 포함한 기업가치평가를 통한 기업거래 및 출자, 담보, 세금, 그리고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 미국내 기업과 개인들의 연방정부의 R&D 과제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1983년 미국과 캐나다의 산업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국제기업거래중개사협회(International Business Brokers Association)'가 설립되어 기업의 M&A 등 기업거래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아래에서 보듯이 NTTTC를 제외한 모든 기관은 민간 기관으로서 자체 회

34) 이회범, 앞 글, 2000. 4.

35) 김선봉, 앞 글, 2000. 4.

36) 설성수, '기술과 경제' 강의, 2000. 3.

나 협회에서 표준의 제정 및 회원 활동지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그리고 교육 및 시험을 통한 전형 및 회원의 윤리성을 포함한 심사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또 각자의 고유한 사업 영역에서 전문성의 제고 및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1. 가치평가기관

1) ASA(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³⁷⁾

1936년을 기원으로 1952년 법인화 된 ASA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감정평가전문인 조직이다. 또 1987년 미국 국회에 의해 공인된 평가표준 및 기준을 만드는 The Appraisal Foundation의 주요한 멤버이다. 그 주요 업무분야는 기업평가, 보석감정, 각분야별 기계 및 기술평가, 기타 예술품 및 부동산 감정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요 역할은 회원의 윤리규정 제정 및 시행, 평가표준제정, 회원전형 및 교육, 시험, 자격인증 및 회원관리, 다양한 회원보수교육 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고객에게 적절한 전문가를 알선하는 일 등을 한다.

회원의 구성은 인터뷰를 통해 승인되는 후보 회원(Candidate Membership)으로부터 출발한다. 후보회원은 일정기간안에 ASA의 윤리시험을 통과하고 감정평가표준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또 대학(college) 졸업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친 Accredited Member (AM) 및 대학 졸업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친 Accredited Senior Appraiser (ASA)가 있다. 그리고 특별하게 Master Gemologist appraiser, Fellow designation(FASA)으로 구성되어있다.

2) IBA(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³⁸⁾

1978년 기업가치평가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약 3000명 이상의 전문기업평가사들의 모임이다. 그 역할은 기업평가사의 교육 및 인증을 주요한 임무로 하며,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적 지원, 표준 및 데이터 제공등을 실시한다. 특히 IBA의 Market Transaction Data Base는 15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사', '기업거래중개사', 그리고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 역할은 전문직업으로서의 기업평가사를 널리 알리고, 전문적

37) <http://www.appraisers.org> :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38) <http://instibusapp.org> : The 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

이고 윤리적인 기업평가사를 교육 및 인증한다. 또 기업평가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교육하며, 각 회원에게 근본적인 산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기업평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법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

단체의 공인 자격으로는 CBA (Certified Business Appraiser)가 있으며 그 자격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필기시험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 심사하며 자격 심사위원회의 승인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NACVA(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³⁹⁾

1990년 기업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CPA와 기타 경영전문가들이 설립한 NACVA는, 가치평가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회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신분, 경력, 업종을 공표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한다. 또한 가치평가 서비스를 연구발전시키며 협회의 표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교육의 제공, 현장의 실습 제고, 협회와 그 회원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공하며, 다른 전문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한다. 그 회원은 약 4,500명이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료로 BVRI(Business Valuation Research Institute)의 기업가치평가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Mentor Support Group에 의해 자문서비스도 실시한다.

그 회원자격은 교육, 경험 및 기타 기준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CVA, GVA, AVA로 구분되는 일반회원(Practitioner Membership) 및 공인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 전문회원(Professional Membership), 사무실별로 참여하는 기업발전그룹(Firm Development Group)으로 나눈다. 자격인증 프로그램은 CPA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경험을 가지고 추천되어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CVA(Certified Valuation Analyst), MBA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추천되어 시험을 통과한 AVA(Accredited Valuation Analyst), 그리고 정부에 고용되어 대학 졸업후 2년 이상 가치평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GVA(Government Valuation Analyst)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 2년마다 24시간 및 3년마다 36시간의 지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교육(Quality Enhancement Program) 및 재개정된 평가윤리, 기준, 보고서작성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9) <http://www.nacva.com> :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2. 기술이전기관 : NTTC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⁴⁰⁾

국가기술이전센터(NTTC)는 (NTTC)는 1989년 미국내 기업과 개인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R&D 과제물에 쉽게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미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 기술이전전문가, 기술분야전문가, 기술정보관리 전문가 등을 두고 700억 \$ 규모가 넘는 각분야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술이전전문가, 700여 곳의 정부부설연구소 및 대학 연구소에 10만명의 조사전문가, 기술평가업무와 기술이전업무, 제품시험 및 시제품 제작,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⁴¹⁾.

그 중요한 역할로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DB 제공, NASA 와 공동으로 항공우주기술혁신 관련자료 출판 및 Software,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3. 기업거래기관 : IBBA (International Business Brokers Association)⁴²⁾

1983년 미국 및 캐나다의 산업지도자들이 만든 국제적인 기업거래 및 인수합병 중개인의 모임으로 기본적으로 연간 355\$의 회비납부와 등록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약 9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등의 기업이 소속되어있다. 그 주요한 역할은 회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기업거래중개인에 대한 공공의 이해를 높인다. 또 산업 및 윤리사항을 점검하고 회원의 교육을 담당하며 산업정보 및 대정부활동, 회원간 상호의사소통에 주력한다.

특이한 제도로는 CBI(Certified Business Intermediary) 제도로써 College 졸업 자격 및 3년 이상의 기업중개인 경력이 필요하다. 재무분석 및 기업가치평가를 포함한 교육 및 법적 윤리적 자격검토를 통해 시험 후 인증한다. 또 연간 3회이상 활동을 보고하며 보수교육 등 상당히 엄한 자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Pratt's Stats라는 기업 거래관련 Data Base를 회원들에게 수집, 정리, 운영제공하여 기술거래의 원활화 및 기술가치평가의 참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VI. 기술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

40) <http://www.nttc.edu>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41) 매일경제신문, 2000. 3. 25.

42) <http://www.ibba.org> : International Business Brokers Association.

1. 기술거래사와 기술가치평가사의 관계

‘기술가치평가사’와 ‘기술거래사’의 차이는 위에 언급한 미국의 관련기관에서 보듯이 기술 및 기업의 거래를 중개하는 집단(IBBA)과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집단(ASA, NACVA, IBA)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거래사’는 기본적으로 등록을 통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IBBA의 자격처럼 한국에서도 등록을 통해서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이미 기술의 거래를 위한 민간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의 협의체로서 기술거래협회⁴³⁾ 지난 3월 설립된 것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업무능력이 자격의 유무보다 우선 할 수 있다. 또 민간의 원활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거래사’의 경우 최소의 자격 요건으로 실질적인 사업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가치평가사’의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술의 가치평가는 기술의 거래 및, 담보, 출자, 투자, 그리고 인수합병에서 중요한 요소임으로 그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미국 기관의 경우에도 몇 단계에 걸쳐 회원의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 및 시험, 실무평가보고서, 추천 등 엄한⁴³⁾ 자격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회계사’의 경우에도 실무경력과 시험을 통해서만 평가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 ‘기술가치평가사’의 전문성이 높은 수준임 알 수 있다. 또 평가사의 업무 자체가 기업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월 발족한 ‘공공기관기술이전협의회’ 및 4월 출범한 ‘기술거래소’의 경우, 미국의 NTTC처럼 일정한 수준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나 주요한 역할 자체가 기술의 이전 및 거래를 활성화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기술이전센터(NTTC)’ 및 ‘기업거래중개인’의 경우에도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의 사업성 평가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나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공정한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가치평가사’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2. 기술가치평가사의 자격요건

기술평가사의 전형자격요건은 위의 미국기관들⁴³⁾처럼 회계사나 MBA후 얼마 이상의 실무경력과 기존 평가사의 추천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기술사’나 ‘변

43) 외국의 관련기관 및 자격인증

리사'의 경우에도 소정의 교육과 실무경력을 통해 선발한다. 한국의 경우 기술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이 어려서부터 분리되어 교육됨으로 인해 종합적인 기술과 경제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으므로, 양쪽을 공부한 자⁴⁴⁾로서 소정의 기간동안 실무경험을 갖춘 자나, 관련 분야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관련 업무를 가진 자로서 ^한다. 특히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한국에서는 초기 평가사의 경우 실질적인 평가보고서 및 연구 논문을 통해 자격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그 다음}선발한다.

초기에는 기술가치평가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표준의 확립 및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출신자의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론 및 실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초기교육 및 보수교육으로서 시행하여야 한다.

회원 구분은 위에 언급한 자격을 갖춘 정회원과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특별회원으로 단순화하여 출범하고, 이후 자격의 수준을 세분하여 연구회원 또는 전문회원, 그리고 Senior Membership 또는 Fellowship은 추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기술가치평가사회의 기능 및 역할

기술가치평가사의 주요한 성격은 공정성, 전문성, 윤리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가치평가사의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의 향상은 평가사회의 연구와 사례수집, 평가표준제정,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평가사회는 기술가치평가관련 연구와 사례축적, 그리고 회원과의 정보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술가치평가사의 육성을 주요한 역할로 한다. 특히 평가사 개개인의 윤리성은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으로 사회에만

| 구 분 | CBA | NACVA | | | ASA | |
|----------------------|--------|------------|--------------------|-------------------------|-----------------------------|----------------------------|
| | in IBA | CVA | AVA | GVA | AM | ASA |
| 자격 | 4년제대학 | CPA 자격 소지자 | MBA 학위 & 2년이상 실무경험 | 4년제대학 & 2년이상 정부 기관 실무경험 | college degree & 2년 이상 실무경험 | college degree & 5년이상 실무경험 |
| 시험 | 필기 | 필기 | 필기 | 필기 | 필기 | 필기 |
| 감정평가서 Report or 평가시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필수 |

* IBA의 CBA 경우 NACVA, ASA, AICPA등 관련 단체의 Business Valuation 관련 자격이 있을 경우 필기시험 면제

44) 기술직계열 학업후 Techno-MBA를 이수했거나 기술경영 기술경제과정을 수학 또는 연구한 자, 혹은 반대의 경우.

말길 수 없으며 평가사를 육성 관리하기 위한 법적규정 및 관리기관이 매우 필요하며 기술가치평가사회의 주요한 역할은 바로 회원의 윤리적 검증에 관한 것이다. 이에 기술가치평가사회는 기술가치평가의 표준제정 및 방법론 확립을 위한 연구활동, 그리고 관련 DB 구축, 평가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뿐만 아니라 평가사의 윤리적 검증을 위한 기구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 국가적으로 기술가치평가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여 원활한 기술의 거래, 담보, 출자,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 기술가치평가와 관련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도 다양한 협력을 수행하여, 국제적인 표준을 확립하고 상호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한국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거래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기술가치평가사회의 법적 요건

기술의 평가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지만, 본 회와 같은 민간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가치의 평가가 그 평가시점과 같은 평가요인 및 기술

<표4> 향후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유형과 특징

| 유형구분 | 국가자격제도 | 공인 민간자격제도 | 민간자격제도 |
|-----------|---|--|-------------|
| 법령규제여부 | 개별사업법에서 규정 | 자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 공인민간자격의부정관리 운영에 대한 제재 (동법제22조) - 자격의대여금지 (동법제24조) - 허위광고금지 (동법제30조) | 법령미규제 |
| 검정주체 | 국가 혹은 민간위탁시행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개인, 민간단체 |
| 자격관리기관 | 국가 | 민간/국가 | 개인, 민간단체 |
| 자격분야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 민간자격으로 공인가치가 있는 자격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 - 국가경쟁력강화 가능자격 - 시장실패부문의 자격 -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격 -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할 만한 자격 | 모든 유형의 자격 |
| 자격의 질적 수준 | 공신력이 높음 | 국가적 수준에 상응하는 공신력 유지 | 자격의 질적수준 다양 |
| 자격의기능 | 업무독점형(면허) | 능력인정형 | 능력인정형 |
| 통용성 | 전국 | 전국/지역 | 전국/지역/개인 |

자료 : 인터넷자격인증위원회; <http://internet.ccpak.or.kr>

요인, 그 목적인 사업 및 경제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특징을 가짐으로, 기술가치평가 시 그 평가자의 자질은 본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기술적 가치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대 기업에서 기술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회가 관리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능력 있으며 윤리적인 평가전문인을 양성, 관리하기 위하여 '자격설립법' 및 '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 조항'에 맞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을 검정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VII. 결어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술의 평가로서의 기술가치평가의 중요성과 그 수행자로서의 기술가치평가사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물론 기존의 기술평가기관 및 담당자들이 나름의 기법과 방법론으로 기술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가치평가기법의 마련과 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술가치평가사회는 꼭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윤리적인 기술가치평가사를 양성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기술거래사'와의 관계는 '부동산중개인'과 '감정평가사' 그리고 미국의 기업중개사협회(IBBA)와 가치평가기관(ASS, IBA, NACVA)처럼 간단한 사업자등록과 복잡한 자격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칭)기술가치평가사회창립 및 내부교육, 사단법인 등록, 국가공인자격기관 등록 등 산적한 일들을 앞에 놓고 있다. 또, 조직 및 전형자격, 교육, 시험 등 많은 부분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급하게는 기술가치평가 표준 및 교본 마련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술의 올바른 평가가 기술의 거래 및 담보의 기본이며, 기술출자, 기술사업화의 기반으로 기술발전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되기에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전문인 조직을 통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관련 DB 구축은 미래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최종아님)

- 설성수, “기술가치평가 분석 틀”,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 설성수, 허은녕, 김선근, “기술가치평가의 이론과 실제 - 서설”,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 이희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배경 및 정책방향”,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거래방향, 기술거래소 심포지엄, 2000. 4. 10.
- 김선봉,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거래방향, 기술거래소 심포지엄, 2000. 4.
- 강정호, “기술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코스닥의 역할”,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거래방향, 기술거래소 심포지엄, 2000. 4. 10.
- 김용환, “한국벤처산업의 발전방향과 모델”, 기술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거래 방향, 기술거래소 심포지엄, 2000. 4. 10.
- 현병환, “신제품의 전주기 경제성분석 방법”,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 현병환, “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 양동우, “실무차원의 기술가치평가 - 수익접근법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3-1, 2000. 3.
- 양동우, “실무차원의 기술평가”, 기술가치평가콜로키엄 발표자료, 2000. 5.
- 서상혁, “기술성 평가”, 기술가치평가콜로키엄 발표자료, 2000. 5.
- 안승구, “기술가치평가제도의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 2000. 1. 2.
- Pratt, P.Shannon, Robert F. Reilly, Robert P. Schweihs, *Valuing Small Business and Professional Practices*, New York : McGraw-Hill, 1998.
- Reilly, Robert F., Robert P. Schweihs, *Valuing Intangible Assets*, New York : McGraw-Hill, 1999.
- Boer, F. , Peter, *The Valuation of Technology, Business and Financial Issues in R&D*,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99.
- <http://www.nacva.com> : National Association of Certified Valuation Analysts.
- <http://www.appraisers.org> :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 <http://instibusapp.org> : The Institute of Business appraisers.